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55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송언석 · 박충권 · 박준태
김상훈 · 송석준 · 이달희
신성범 · 유상범 · 인요한
박형수 · 박덕흠 · 곽규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 절차 및 공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신상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범죄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피의자 등의 기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최근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규모와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저해하여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해당 범죄의 피의자 등의 신상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

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2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중전의 제11호) 중 “제10호”를 “제12호”로 한다.

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의 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개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항의 죄 및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1조제1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특정중대 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제2조(정의)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u> <u>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u> <u>1항 및 제2항의 죄</u>
<u><신 설></u>	<u>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u> <u>제21조제1항의 죄</u>
<u>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죄</u> <u>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u> <u>처벌되는 죄</u>	<u>13. -----제12호-----</u> ----- -----